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522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20341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522503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일

피고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변론 종결2023. 5. 31.

판결 선고2023. 7. 12.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1. 3. 체결된 신탁계약을 1,076,143,8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6,143,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천 옹진군 D 대 1,37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의해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수탁받은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피고 B는 2015. 11. 1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805,000,000원으로 하여 도급주었는데,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2층 콘크리트 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H은 피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1. 29. '피고 B는 H에 650,5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인천지방법원 2016가합296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은 '이 사건 관련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1. 15. 피고 B로부터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를 대신하여 H에

590,000,000원을 지급하여 기시공 부분을 승계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위

590,000,000원은 피고 B로부터 향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7. 1. 6. 위 합의에 따라 H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H의 기시공 부분을

승계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H에 2017. 8. 5.까지 59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시공 부분에 관한

피고 B와 H 사이의 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7년 제00011호로 '피고 B는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590,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H의 기시공분 승계 채권임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590,000,000원을 2017. 7. 5.까지

지급하며,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호텔은 2017. 9. 28.경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신탁

1)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와 호텔에는 ①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 채무자 J,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6. 접수 제90431호로 마쳐졌다가 이 사건 호텔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같은 등기국 2017. 12. 18. 접수 제47259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K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② 채권최고액 55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M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30. 접수 제31880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M 근저당권'이라 하고, K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 B 측은 2018. 1. 3. N조합와 O조합, P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때까지 발생한 K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85,743, 311원과 M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4,67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그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한편, 같은 날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하여 피고 C를 수탁자, N조합와 O조합, P조합를 합계 3,274,000,000원의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 3. 접수 제2601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청구이의 소송의 진행

1) 피고 B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9. 3. 29. '이 사건 관련판결금 채권이 2017. 1. 6. 원고에게 양도되고 피고 B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590,000,000원의 채권으로 대체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0990),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B는 2018. 10.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전제인 원고와 H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2017. 2.부터 5.경까지 지급한 866,964,980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변제충당되었으며, 피고 B가 지급할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590,000,000원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 1,870,000,000원을 합한 2,460,000,000원인데 그중 2,057,714,149원을 원고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서 원고의 지체상금 채무 282,370,000원과 하도급업체에 작성해 준 직불각서상의 금액 37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1. 10. '①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 판결에서 원고와 H의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H로부터 양수받은 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존재하고, ②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866,964,980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 B가 2,057,714,149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각서상의 돈을 공제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서 이를 감액 또는 상계한다는 주장일 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와는 무관한

주장이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0983). 이에 대해 피고 B가 종전 주장과 함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지급약정의 취소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07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6, 10, 13호증, 을가 제2에서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59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는 단순히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피고 C에 신탁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약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 실질적으로 신탁법 제8조 제1항2)의 수탁자에 해당하여 약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거나 신탁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호텔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가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원리금 합계 1,076,143,83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B 측이 신규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신탁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신탁수익자인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7. 1. 6. 원고에게 590,0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2017. 7.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참조).

2)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주식회사 Q(감정인 R)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피고 C에 신탁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그 신탁의 원인이 된 자금 대출은 실질적으로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① 피고 B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토지와 호텔 외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치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므로, 그 차액만큼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존재하였다. 반면 피고 B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우선수익자들을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와 호텔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대출 자금은 모두 피고 B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2018. 1. 3. 기준 시가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77,953,000원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이 사건 토지와 호텔에 관해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 앞으로 위 시가에 상당하는 합계 3,274,000,000원의 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고, 2018. 1. 25.에는 S을 650,000,000원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원부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그 신탁원부가 등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에 피고 B가 후순위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후순위 수익권은 채권으로서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우선수익권을 가진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나 S에 대해 그 수익권을 만족시키고도 원고의 채권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피고 B에 배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후순위 수익권은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원고 등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기존 공동담보 부분에 관해서 이를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의 사해의사

1)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신탁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수익자인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 피고 B에 자금을 대출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위 우선수익자들을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으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406조의 특칙으로서, 수탁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신 신탁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탁관계자의 보호를 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신탁수익자의 선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위탁자인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신탁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1)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피고 B가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을 신탁하면서 그 신탁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적극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피보전채권액은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채채권을 포함한다.

나) 공동담보 적극재산의 가액

(1)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권 합계: 2,440,413,311원

= K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985,743,311원과 + M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454,67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음)

(2)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가액: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① 2018.01.03. 기준시점의 시가 감정액

토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D	1,370	414,000	567,180,000
건물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E 호텔	1,695.75	-	2,710,773,000
합계	3,277,953,000			

② 2021.10.31. 기준시점의 시가 감정액

토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D	1,370	541,000	741,170,000
건물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E 호텔	1,695.75	-	2,805,929,160
합계	3,547,099,160			

(3)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가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모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고,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1,106,685,849원(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0. 31. 기준 가액 3,547,099,16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440,413,311원)이다. [T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U)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호텔 가액의 합계가 2018. 1. 3. 기준 2,402,006,500원, 2021. 10. 31. 기준 2,786,568,000원이다. 그러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가 H에 도급하였던 이 사건 호텔의 공사대금이 2,80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호텔 공사대금만으로도 위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점, ② 피고 C의 일반거래(공매)를 위해 그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V이 이 사건 토지와 호텔의 2019. 4. 10. 기준 시가를 감정한 결과 그 가액 합계를 3,728,311,030원(이 사건 토지 가액 905,570,000원, 이 사건 호텔 가액 2,822,741,04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③ 이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고의 재감정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T감정평가사사무소의 위 감정촉탁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앞서 제3항에서 본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122,692,622원[= 590,000,000원 × {1 + (0.15 × (6년 + 7/3663))}], 원 미만 버림]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 1,106,685,849원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122,692,6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76,143,8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은 1,076,143,8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076,143,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장동규

판사신진경

별지

1) 피고 B 대표 L의 아들이다.

2)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3. 7. 6.부터 2023. 7. 12.까지 7일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분모를 2023. 7. 6.부터 2024. 7. 5.까지의 1년으로 하는데, 2024년은 윤년이므로, 366일을 분모로 계산한다.